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해

-독거노인보호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해

-독거노인보호사업을 중심으로-

- 독거노인 실태와 현황
- 노인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이해
- 주요개정안내

독거노인 실태와 현황

한겨레

2012년 12월 05일 (수)
14면 사회

독거노인 숨진지 20여일 만에 발견

한국일보

2012년 05월 12일 (토)
09면 사회

독거노인 빠르게 증가… 2035년엔 343만명

주검 부패 심하고 방안에 악취
올해 일감 끊겨 기초수급자 지정
고혈압·고지혈증 등 심하게 앓아
기온 떨어지면서 지병 악화된 듯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으며 단칸방에서 홀로 살던 할머니가 가족과 연락한 지 20여일 만에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계일보

2011년 03월 10일 (목)
10면 사회

"짐 되기 싫다"… 안타까운 노인 자살

10만명당 77명… 20년새 5배↑
경제능력 없어 극단적 선택





독거노인 현황

독거노인 인구의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15년	2019년	2025년	2035년	2045년
노인 인구 수(*) (총 인구 중 비율)	6,541 (12.8)	7,693 (14.8)	10,508 (20.0)	15,176 (28.7)	18,179 (35.6)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노인 인구 중 비율)	1,203 (18.4)	1,471 (19.1)	1,990 (18.9)	3,003 (19.8)	3,719 (24.5)

* 장래인구추계(2016). 통계청.
** 장래가구추계(2015). 통계청.

독거노인의 실태

독거노인은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

건강수준 및 자살률

평균 만성질환 2.9개(부부노인은 2.4개)

운동 실천율 57.7%(부부노인 60.3%)

자살 생각율 15.3%(부부노인 8.1%)

노인 자살률 58.6명(노인인구10만 명당, OECD'15)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이하 53.6%

일상생활 수행 가능

일상생활 수행 곤란 15.6%

안전 사고

안전사고 경험률 4.5% (부부노인은 2.2%)

골절로 인한 진료비 4,230억 원('1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독거노인 실태와 현황



위기노인(고독사 예비군)
5.1%(7.5만 명)
사회적 관계 단절, 생활여건 열악,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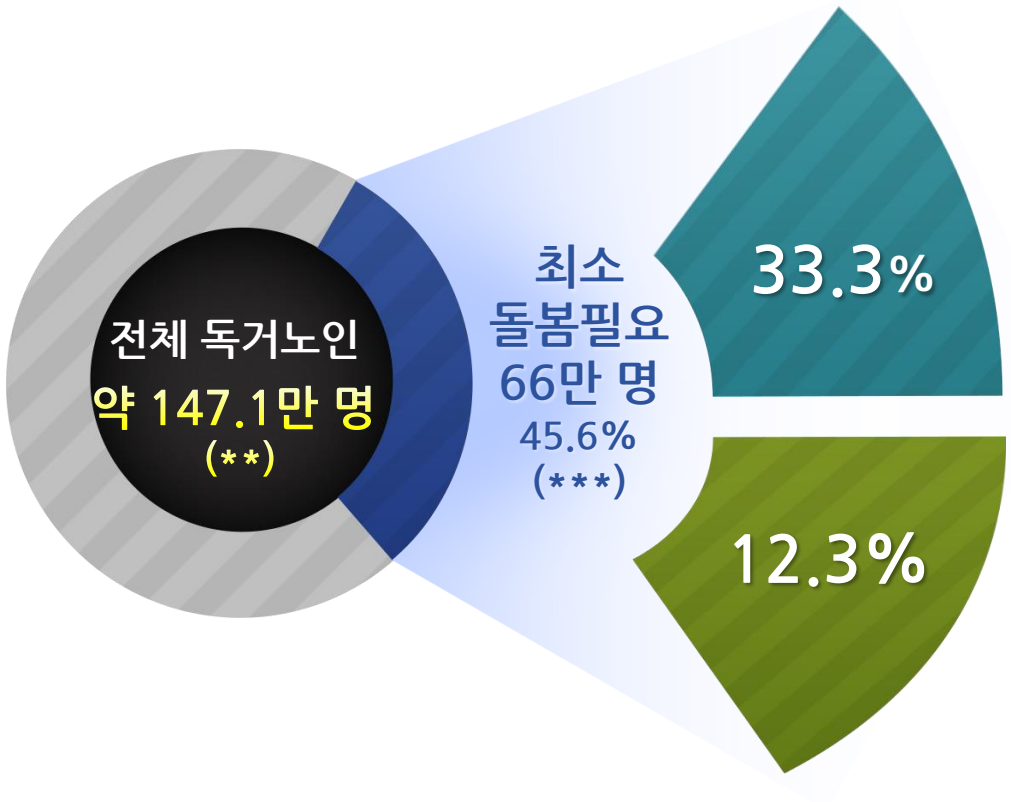
취 약 노 인
7.0%(10.2만 명)
사회적 교류가 일부 이뤄지지만
생활여건 열악하며 일상생활 능력에 제한 많음

관심 필요노인
33.5%(49.2만 명)
사회적 교류가 이뤄지지만
독립적 생활에 다소의 어려움

안전 / 자립노인
54.4%(80만 명)
사회적 교류가 있고,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

독거노인 생활실태 분석과 적정 보호인구 추계 , 권중돈(2016), 2019 기준

독거노인 실태와 현황



정부지원 대상자 **약 49.1만 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9.5만 명
- 독거노인응급알림서비스 8.8만 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8만 명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0.6 만 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각지대 방치 독거노인 **약18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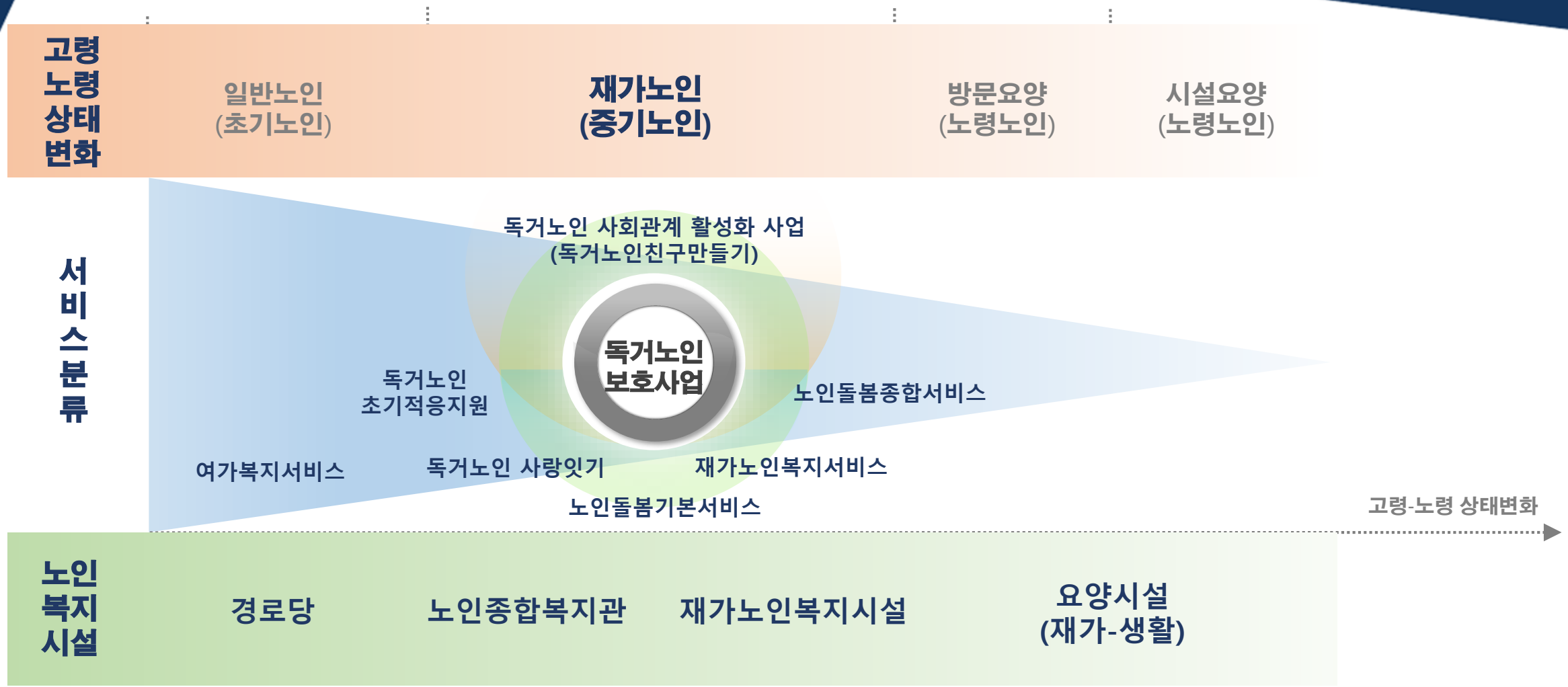
- 민관 기업 및 단체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독거노인 사랑잇기 전화>를 진행
  → 사각지대 독거노인 보호 8만 명

**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독거노인 생활실태 분석과 적정 보호인구 추계, 권중돈(2016)

노인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이해

노인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이해



노인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이해

-노인돌봄사업 현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소득·주거·건강·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서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독거노인 사랑잇기
민·관에서 운영중인 콜센터 직원,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후원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우울증 완화를 위한 투약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의 자살예방

•독거초기적응지원
초기 독거노인 및 잠재 독거위험 가구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후준비, 자립생활향상, 죽음준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위기·취약집단으로의 유입 예방

노인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이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내용-

사업 대상자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단, 독거노인의 요보호 수준 및 제공받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단순물품수혜자 (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복지용구수혜자), 노노케어 등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중복 제공 가능**

노인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이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내용-

서비스내용

- **독거노인 현황조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 독거노인(다른 재가서비스 수혜자 제외)에 대한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 대상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
- **안전확인**
  -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로 정기적인 안전확인 실시
- **생활교육**
  - 보건복지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제공
  - 교육주기 : 생활관리사별 월 1회 이상(회당 1시간),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 **서비스연계**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 욕구를 파악, 공공기관 및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지원
  - 유사서비스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노인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이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추진흐름-



독거노인 현황조사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1인가구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방문조사
-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신청
- 거부자, 부재자 등의 관리계획

서비스 제공 동의

- 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대상자승인

- 대상자등록 및 시군구승인

생활관리사 배치

- 담당생활관리사 배치 및 종합사정계획 수립

안전확인

-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 기상특보 안전확인

생활교육

- 생활교육 계획수립
- 장수노트, 치매예방 등

서비스연계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후원물품, 사회서비스 등

종결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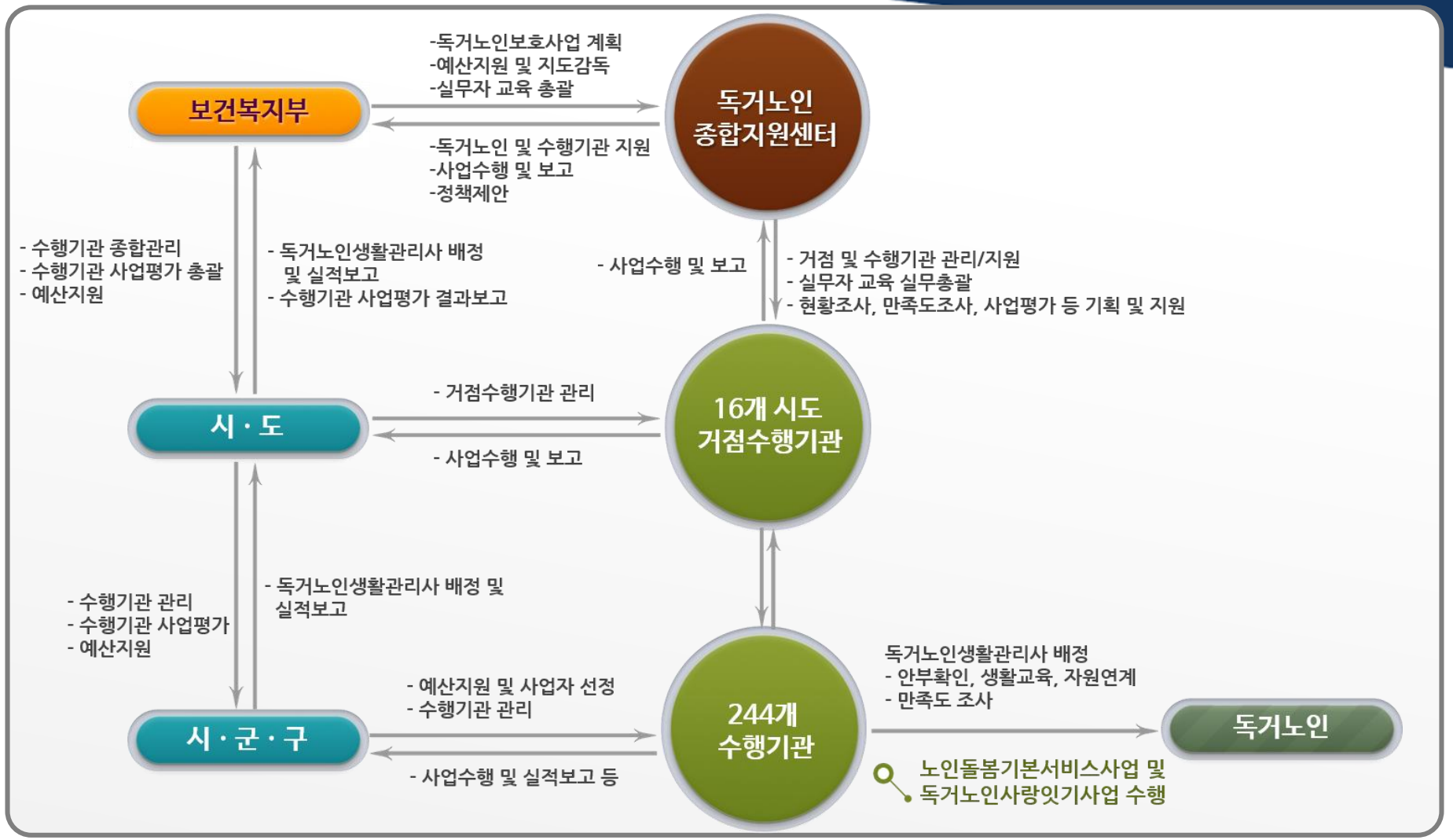
- 종결신청서 작성 및 종결행정처리

사후관리

- 사후관리 필요대상자 사후관리 실시

노인돌봄사업 전달체계의 이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추진체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주요 개정 안내

주요개정안내

주요 정책 흐름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돌봄서비스 법적근거 강화
- 보건복지부 '2기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기능 확대

사업추진 방향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 확대(서비스대상자 확대, 예비 독거노인 관리 등)
- 독거노인 현황조사의 방향 및 방법 제고(연구 계획)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능 개선(요보호수준별서비스제공,위탁기간및평가개선)

주요개정안내

서비스 제외 대상

- 서비스 제외 대상 기준 보완
  - 서비스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검토, 사각지대 발생 예방

지침내용

- 제외대상
  - 국고 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으로 방문, 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 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단, 독거노인의 요보호 수준 및 제공받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단순물품수혜자(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복지용구수혜자), 노노케어 등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중복 제공 가능

주요개정안내

독거노인 현황조사

- 현황조사 구분 명칭 변경) 정기조사, 추가조사 → 정기조사, 자체조사
- 현황조사 대상 명칭 변경) 기본대상, 추가대상 → 기본대상, 확대대상

지침내용

- 현황조사 구분
  - (정기조사) 전국 단위조사로서 연 1회 실시
  - (자체조사)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현황조사 대상
  - (기본대상) 만 65세 이상 1인 단독 가구 노인* 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포함
  - (확대대상) 기본대상 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발굴 및 의뢰된 독거노인

주요개정안내

대상자 선정요청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기준 확대

  - 돌봄이 필요한 조손가정, 치매노인부부 등의 경우 대상자 추천 가능

지침내용

- 추천 대상자 판정

  - 실제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조손가정, 치매노인부부가정 등 동거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추천 가능

    ※ 단,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전체 사업 배정량 2%수준까지 추천가능

주요개정안내

서비스 계획 수립

- **요보호 수준(등급)을 고려*하여 서비스 계획 수립**

  * 독거노인의 현황조사 및 판정점수, 욕구, 보호 체계 등

-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실시**

  ※ 요보호 수준(등급)에 따라 안전확인 등 세부적인 서비스의 주기 및 방법을 고려하여 제공

지침내용

- **안전확인**

  - **(서비스내용)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안전확인,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ICT기술 및 민간자원활용 등의 안전확인 실시**
  -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한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 요보호 수준(등급)에 따른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확인 주기 및 방법을 고려

    ※ 알코올 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가구의 경우에는 보조 인력 등을 활용하여 동행 방문

주요개정안내

공공사례관리연계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종합사정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 의뢰 실시**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전담팀,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수행기관과 사례관리개입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관리 실시

  ※ 대상자 서비스 의뢰·연계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참석 요청시 적극 협조

  * 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부터 방문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 타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및 결정통보

주요개정안내

서비스 대상 인원

- 인원
  - (사업대상자) 생활관리사 1명당 평균 25명
  -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0명당 서비스 관리자 1명 수준으로 배치

생활관리사 업무

- 사업수행기관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효율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생활관리사 업무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행정보조, 준사례관리, 생활교육, 현황조사 등의 업무가능. 단, 수행기관 사업량은 변경없음

감 사 합 니 다